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구분경리한 내국인

6-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을 지급받고 구분 경리한 경우 손금 산입



지원 대상

-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일정한 법률*에 의하여 연구개발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고 구분 경리하는 내국인
- 2025년부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연구개발출연금으로 출연금의 범위 확대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일정한 법률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구분경리 사례(「법인세법」 제113조)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처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처리
-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법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처리
-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처리
-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을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법법인(분할법인을 포함)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처리

지원 내용

-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고 별도의 회계처리로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 산입**
- 손금산입한 금액은 다음에 방법에 따라 **익금산입**
 - ①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 해당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시 익금 산입**
 - ②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감가상각자산의 경우는 **감가상각시** 익금에 산입하거나 **처분시** 남은 잔액 익금에 산입
 - 그 외의 자산의 경우 자산의 **처분시** 일시 익금 산입

유의사항

- 사후관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일시 익금 산입(합병, 분할의 경우 제외)
 - ①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인이 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 ②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전에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 최저한세 적용대상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 2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Q. 질문 1

나사장은 금년 신소재의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 출연금을 지급받았고,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구분 경리하여 관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소재 프로젝트를 위해 바쁘게 일했던 나사장은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을 망각하였고, 이를 차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개발출연금이 상당히 큰 금액이어서 나사장은 다음과 같은 걱정이 생겼습니다.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미제출과 관련하여 세법상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A. 세무사 답변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의무는 협력의무에 불과하므로 나사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은 그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감면되고 감면신청이 있어야만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감면신청에 관한 규정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감면신청서의 제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을 감면하여야 합니다.²¹⁹⁾

219) 대법원 2003두773, 2004.11.12.

용어 해설

- 손금산입 :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관련된 것을 말함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산입이란 손금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의미임
- 익금산입 :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함(「법인세법」 제15조), 다시 말하면, 익금이란 법인세법상 수입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음, 익금산입이란 익금으로 인정을 한다는 의미임
- 감가상각 : 유형자산의 공정한 비용배분을 통하여 각 회계기간의 손익을 올바르게 계산하고 이에 따라 진실한 재무상태 및 경영성적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원가를 각 기간에 배분하는 절차를 말함